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1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I. 결의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윤영희 의원 등 10명

나. 제 안 일 : 2025. 8. 8.

다. 회 부 일 : 2025. 8. 14.

라. 의안번호 : 292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서울시 내 초·중·고등학교 및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보행자 교통사고 및 안전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등·하교 시간대 차량 혼잡, 불법 주정차,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보행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특히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학원가 주변은 제도적 보호장치와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전역의 학교 및 학원가 주변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의 교통안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중상 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2020년부터 ‘서울시 어린이보호 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추진 방향 >

구분	주요내용
안전운행	· 초등학교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 제한속도 하향조정(간선:30Km/h, 이면:20Km/h)
시인성	· 불법 노상주차장 정비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특별단속, 주민 신고제 확대 · 옐로카펫(싸인블록), 노란신호등, 태양광LED표지판
안전시설	· 보호구역 초등학교까지 확대 ·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 보호구역 진단 및 시설 정비 · 횡단보도 신호등, 미끄럼방지포장,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 등하교 지도, 학교 안전협의체 운영
안전문화	· 시민체감형 홍보,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2020.2.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647개소로 이중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에 1,128개소가 있으며 어린이집 467개소, 학원 40개소, 기타 12개소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지정·운영되고 있음.¹⁾²⁾
- 그러나 전국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강화를 위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020~2024) >

시행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0	483	3	507
2021	523	2	563
2022	514	3	529
2023	486	2	523
2024	526	2	556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025.9.

- 또한, 서울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고, 주 출입구가 이면도로에 연결된 학교가 많은 서울시 특성을³⁾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1)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 2025년 상반기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서울특별시 교통실, 2025.7.

3) 학구도를 고려한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유형별 발전 방안, 월간교통 2023-04, 2023.4

<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020~2024) >

시행연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0	65	0	70
2021	68	1	83
2022	77	1	78
2023	82	0	84
2024	96	1	102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서울), 2025.9.

-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4부터 18시 사이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시설물의 설치 확대 및 규제의 강화 이외에도 어린이 통행이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시간대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2024) >

구분	합계	2시~4시	6시~8시	8시~10시	10시~12시	12시~14시	14시~16시	16시~18시	18시~20시	20시~22시	22시~24시
사고(건)	526	1	5	65	15	61	139	131	87	17	5
사망(명)	2	0	0	0	0	0	0	2	0	0	0
부상(명)	556	1	6	68	16	61	154	134	91	19	6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시간대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025.9.

- 특히, 학원 밀집 구역 등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전동킥보드 사고의 운전자 42.2%가 20세 이하 청소년이며 40% 이상이 무면허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도적 개선논의가 시급한 실정임.⁴⁾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보완을 통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타당할 것임.

4) 공유 킥보드 사고 40%는 '무면허'... 업체는 면허 확인도 않고 대여, 동아일보, 2025.05.30.

-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교통실은 서울시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며, 교육위원회 소관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를 수행하고 있는바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도 부합함.⁵⁾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희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⁶⁾
 - 교통위원회가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으며, 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사전협의에 동의하였음.

담당 연락처

02-2180-7691

5)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